

상조회 회칙

1978. 08. 01. 최초제정	2012. 08. 21. 부분개정
2013. 09. 14. 부분개정	2014. 08. 18. 부분개정
2022. 09. 01. 부분개정	2025. 09.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 상조회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보건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대전보건대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한다. 단, 비전임 교원 및 임시직은 제외한다.

제5조(가입)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교직원으로 부임한 날로부터 가입된다.

【단. 조교(학과, 행정)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임 후 1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 회원의 자격 기간 산정기준은 입회한 날로부터 탈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할 경우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①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9.01.>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5명
4. 감사 1명
5. 간사 3명(행정간사 1명, 사업간사 2명)

②이사의 구성은 교직원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 임기 만료 시 재구성한다.

③이사의 구성인원은 교원 3명,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9.01.>

제8조(선출 및 임기) ①회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삭제<2006.08.17.>

③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 ②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 : 이사는 임원회에 의안을 제출, 심의하고 임원회의 결과를 전달 반영시킨다.
- ④감사 :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⑤간사 : 사업계획과 아울러 그 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사업

제10조(종류) 본 회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친목에 대한 사업
- ②회원에 대한 상조금 지급 및 축하, 조문, 위로행사
- ③회원에 대한 금전 대출 및 복지 사업
- ④삭제<2022.09.01.>
-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1조(집행) 본 회의의 사업 및 행사는 예산과 시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 집행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2조(종류) 본 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와 임원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3조(회의)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과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2.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결산 심의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소집) ①정기총회 : 격년 8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임시총회 : 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5조(의결) ①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회비) ①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임시회비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정기회비는 입회한 그 달부터 각 회원당 2,000원씩 봉급 지급일에 회장이 일괄 공제한다.

③임시회비는 회칙상 필연적으로 세입이상의 세출이 생길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2항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징수 할 수 있고, 애·경사가 발생 시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제17조(관리) ①본 회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에게 대여할 수도 있다.

②본 회의 회계 사무는 사학기관 세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말로 한다.

제19조(장부비치) 본 회의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원명부, 임원명부
2. 수입부, 지출부, 금전출납부
3. 대출장부
4. 예산·결산에 관한 서류
5. 퇴직금 지급부
6. 각종 회의록
7. 세입·세출 증빙서
8. 회칙 및 규칙
9.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장 상조금지급

제20조(종류) 본 회에서 지급하는 상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축의금

1. 결혼 : 회원본인, 회원자녀
2. 회갑 : 회원본인, 회원의 부모, 회원배우자의 부모
(단, 상조회원 가입 후 2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정년(명예)퇴직 시 회원 본인 회갑 축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별금으로 지급한다.)

②부의금 : 사망(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

③퇴직금 : 회원이 퇴직하는 경우 개인총불입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2.09.01., 2025.09.01.>

④위로금 : 회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50,000원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

⑤회원 애사 시 상조회 간사업무 수행비 및 운전기사 수고비, 교통비를 지급하며, 지급

액은 다음과 같다.

1. 간사 업무 수행비 : 본교 교직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하여, 별표2 국내여비 정액 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한다. 단 운임비는 사용 영수증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조회 조문차량을 학교에서 지원 받는다. 단 대전 시내일 경우 상조회 조문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3. 행정간사 업무수당을 월 50.000원 지급한다.

제21조(지급) 상조금의 지급일은 원인 발생 1주일 전·후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에 의거 지급한다.

제22조(대상) 상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
2. 대상자 확인은 증빙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공인하는 사실 증명이나 구두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제8장 대출 및 복지사업

제23조(대출) 대출은 본 회칙에 의거 회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한다.

제24조(대출금) ①대출한도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대출금 보증인 선정(설정)은 100만원 미만은 보증인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내 대출시 교내 교직원 상조회원 중에서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설정)하고 대출한다.

제25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회원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 대출을 받는다. 단, 대출회원이 많을 시 재 대출을 제한한다.

제26조(상환) ①원금은 대출일수/대출금의 공식에 의하여 분할 상환한다.

②{원금+(원금× 상환이율/100)/상환회수}=상환액

③대출금 상환을 중도에 일시 상환을 할 때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상환한다.

※공식 : 원금-기상환금액(원금)× 이율/대출월수 = 일시상환액

제27조(금리) ①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교원공제회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한다.)

②대출금리 적용 시기는 회기 시작 월의 금리로 한다.

③대출금액 이자는 봉급지급일에 회장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

제9장 보칙

제28조(경과조치)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기 대여된 교직원도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1978. 8. 1.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1. 본 회칙은 1990. 8.17. 개정하여 8. 25.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1991. 8.16. 개정하여 8. 24.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1994. 8.19. 개정하여 8. 25.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1999. 8.06. 개정하여 1999. 08. 01.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1999. 9.15. 개정하여 1999. 09. 22.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2000. 8.25. 개정하여 2000. 08. 26.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2001. 8.02. 개정하여 2001. 08. 03.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2002. 8.19. 개정하여 2002. 08. 19.부 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2003. 8.06. 개정하여 2003. 08. 06.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2004. 8.20. 개정하여 2004. 08. 20.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1996. 8. 16.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1996. 9. 26.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1998. 8. 19.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1999. 8. 01.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1999. 9. 22.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0. 8. 26.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1. 8. 03.부터 시행한다.
- 1. 경과조치 : 현재 가입된 조교(행정조교 포함)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2001.8.31.까 지 탈퇴할 수 있으며, 가입된 회원은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탈퇴를 할 수 없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2. 1. 01.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2. 8. 19.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3. 8. 06.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4. 8. 20.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5. 8. 18.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07. 8. 18.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12. 8. 21.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12. 9. 14.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14. 8. 18.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 이 개정 회칙은 2025. 9.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조회 공제액

구 분	항 목	지급금액		
		회원부담금	상조회부담금	계
회 갑	부모 회갑	3,000	0	3,000
	회원본인 회갑	3,000	0	3,000
	교직원 정년(명예)퇴직시 전별금	3,000	0	3,000
	배우자 부모 회갑	2,000	0	2,000
사 망	회원 및 배우자 사망	10,000	0	10,000
	부모 사망	4,000	0	4,000
	배우자 부모 사망	3,000	0	3,000
	자녀 사망	3,000	0	3,000
결 혼	회원 결혼	3,000	0	3,000
	자녀 결혼	2,000	0	2,000
위 로	위로금		6일 이상 입원시	50,000
퇴 직	상조회 탈퇴금		상조회칙 제20조참조	

※ 지급액 = 지급금액× 회원수이며, 위로금 및 퇴직금은 제외